

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

개정 2022.9.15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“법”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라자드 그룹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/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

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나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(법 제86조, 동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)
- 다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라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사. 채권평가회사보수 :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급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회사는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투자자문(또는 투자일임) 기본수수료 및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는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특히, 법 제98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자문(또는 투자일임) 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(성과수수료 계산방법 포함)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④ 회사는 투자자문(또는 투자일임)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(또는 투자일임) 계약서를 변경한 후에 인상하여야 한다.

제6조(설명 의무)

회사는 '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'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투자광고)

- ①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 '금융소비자 보

호에 관한 법률'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,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시 및 통보)

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준의 제정 및 개정)

이 기준은 이사회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